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0

발의연월일: 2024. 6. 21.

발 의 자: 박덕흠 · 구자근 · 엄태영

이헌승 • 고동진 • 정희용

강승규 · 김승수 · 장동혁

조지연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시장개방 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·사회·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농어업은 지속가 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음.

농가인구는 90년대 이후 3.7%씩 감소하고, 농가 고령화율은 우리나라 국민 고령화율의 3배 수준이며, 현 상태대로 가면 2050년에는 226 개 시·군·구 중 89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음.

농업소득은 농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및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 등으로 지난 20년간 천만원대 초반 대에 머물면서 도농 간소득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데, 1995년 96%에 달했던 도시가구 소득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19년 62% 수준까지 하락함.

농업소득 성장의 구조적 한계로 2030년에는 그 비율이 61.6%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지원 없이 농업인 소득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임. 또한 농촌마을의 열악한 인프라로 농촌지역 20~30대의 70%는 농촌을 떠나고 싶어하고 있음.

어촌 또한 2020년 기준 어업인 평균 소득은 5천 300만원으로 도시가구 평균 소득인 6천~6천 500만원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실정이고,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인구가 2000년 대비 61.4% 감소하고 2045년에는 어촌 지역 491개 중 87%가 소멸 고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임.

다행히도 농업·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2010년 55.9%에서 2018년 72.2%로 증가하고 있으며, 국민들은 농어업 ·농어촌이 안전한 먹거리 제공, 환경·생태계 보전, 여가·휴식처 제공,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음.

이에 농어업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의 공익적 가치창출활동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이 법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함(안제1조).

- 나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기초연금이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,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다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함(안 제5조).
- 라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 기초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금액을 정하되 연 최소 120만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,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도록 함(안제6조).
- 마.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신청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하고, 지급 신청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,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수급자에게 통지하도록 함(안 제7조부터 제10조까 지).
- 바.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, 수급권의 상실, 환수 등을 규정함 (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).
- 사. 농어업인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, 수급 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 및 제17조).
- 아.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인 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

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,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상호 분담하도록함(안 제20조).

법률 제 호

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 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.
- 제2조(주관) 이 법에 따른 농어업인 기초연금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주관한다.
-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농어업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,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.
 - 2. "농어업인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 인
 - 나.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

임업인

- 다. 「수산업・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
- 3. "농어업인 기초연금"이란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·증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.
- 4. "농어업경영체"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.
- 5. "농어촌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.
- 6. "종합소득금액"이란 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
-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기초연금 이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행정적·재정적으 로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매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은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수 없다.
 - ③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업과 어업의 지속

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어촌의 생태계 보존, 마을 환경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야 한다.

제2장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

- 제5조(지급대상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(이하 "수급권자"라 한다)에게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한다.
 - ② 수급권자는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당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면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 - 1.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8조에 따른 급여
 - 2.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급여
 - 3. 「군인연금법」 제7조에 따른 급여
 - 4. 「별정우체국법」 제24조에 따른 급여
 - ④ 수급권자 가구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 상인 자는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.
 - ⑤ 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6조(지급금액 및 지급방법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 기초 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금액을 정하되, 연 120만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의 적용기간은 지급금액이 결정된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.
 - ③ 농어업인 기초연금은 현금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 - ⑤ 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기초연금위원회의 구성·운영, 그 밖에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 시기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농어업인 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결정 등

- 제7조(지급신청) ① 수급권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"지급신청기관의 장"이라 한다)에게 농어 업인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수급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

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를 제공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신청·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정보의 제공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권자에게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대상, 금액 및 신청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 제공의 내용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자료조사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농어업인 기초연금 수급권(농어업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. 이하 "수급권"이라 한다)의 발생·변경·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·재산 등에 관한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·조사 또는 농어업인 기초연금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, 조사범위, 조사담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신 청을 각하하거나 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.
- 1.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
- 2. 조사 · 질문을 거부 ·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
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.
- ⑥ 제1항에 따른 조사·질문의 범위·시기·내용·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행정조사기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지급의 결정 등)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를 한 후 농어업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·변경·상실 등을 결정한 다.
 - 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

- 이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그 밖에 수급권의 발생·변경·상실 등의 결정 통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4장 농어업인 기초연금 수급권자 사후관리

- 제11조(지급 정지)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농어업인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.
 - 1.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,
 「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직접지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장계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 - 2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 - 3. 농지·산지·어장과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 -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링으로 정하는 경우

-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수급권의 상실) ①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수급권을 상실한다.
 - 1. 사망한 때
 - 2.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
 - 3.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- ②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수급권을 상실하여도 수급권자의 가구 구성원이 있을 경우,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가구 구성원의 최고 연장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신고)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(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의 경우에는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- 1.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·소멸한 경우
 - 2. 제12조 각 호에 따른 농어업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 생한 경우

- 제14조(환수)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농어업인 기초연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
 - 2. 제11조에 따라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농어업 인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
 - 3. 그 밖의 사유로 농어업인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
 - 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농어업인 기초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농어업인 기초연금(이하 "환수금"이라 한다)과 상계할 수 있다.
 -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유를 농어업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9조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15조(환수금의 고지·독촉 및 징수)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4조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

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.

- 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.
-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 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
제5장 농어업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보호

- 제16조(수급권의 보호) ①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.
 - ② 농어업인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.
- 제17조(이의신청) ① 제10조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- ③ 그 밖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

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6장 보칙

- 제18조(시효) 제14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
- 제19조(끝수의 처리) 이 법에 따른 농어업인 기초연금액, 환수금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- 제20조(비용의 분담)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인 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와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상호 분담한다. 이 경우 그 부담비율은 농어업인 인구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시·도의 조례 및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7장 벌칙

제21조(벌칙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인 기초연금을

수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제22조(과태료)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,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